

갈등조정 심리학 - 민·형사 조정의 실제

노영희*

[Abstract]

After the medi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part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eedy resolution of dispute is made and a win-win system is properly settled. The followings are in-depth analyses of actual cases in civil and criminal mediations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and it should be monitored whether mediation in reality will result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stages of mediation.

The following will make overall classification of whether actual medication in civil and criminal cases will bring about some specific characteristic, and will introduce psychological state of persons who are engaged in the mediation and stage of effective mediation.

In addition, the paper will also introduce cases of both success and failure among the real cases in which thus far, the author has been involved in the dispute mediation as one of mediation committee members.

<目 次>	
I. 조정의 분류 1. 민사 조정 2. 형사 조정 II. 조정의 실제 1. 개관 2. 조정의 특성 3. 조정을 위한 인간 심리의 이해	4. 갈등의 기본 특성 이해 5. 갈등 고조의 단계 6. 갈등 해결 III. 성공사례/실패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IV. 결어

- 한글주제어 : 민사조정, 형사조정, 갈등조정, 조정심리학, 조정
- 영어주제어 : civil mediation, criminal mediation, mediation of conflict, mediation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대체적 분쟁해결의 일환으로 '조정제도'가 소개된 이후 연간 조정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분쟁의 조기 해결과 상호 '윈-윈'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조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조정 당사자의 다양한 심리상황과 이에 따른 조정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여 이하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I. 조정의 분류

1. 민사 조정

(1) 민사 조정의 유형

법원에서는 민사 조정의 경우,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접수되었지만 조정에 친(親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추려서 '조정사건'으로 분류하고 해당 조정위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문제는, 법원에서 조정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들, 즉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의 특성이 과연 조정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2) 조정에 친한 사건

일용의 기준은, ①금액의 다과와 ②사건의 정형성 여부, ③분쟁 당사자간의 관계 등이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조정 친화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임차료 미납 사건, 소액의 공사대금 혹은 하자 보수 청구, 대여금 사건 등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정 친화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정형화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입증에 필요한지, 그러한 주장과 입증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등을 가늠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형화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별 사안마다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법리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적절히 조율하여 당사자들의 감정적 화해를 꾀하는 것 또한 조정위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상호 감정적 의존상태나 원망 상태가 심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조정에 친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분쟁으로 인하여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져 있고,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으로 오는 것이어서 원만히 양보하고 타협하기가 쉽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회복 불능의 감정 상태가 조정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2. 형사 조정

(1) 형사 조정의 특성

형사 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인 검찰청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경우 A의 실제 목적은 B를 형사 고소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결국 B가 금원을 변제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B가 변제능력과 의사를 보이면 비교적 형사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 형사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외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의 경우는 조정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논란이 있다. 더욱이 형사적 처벌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처벌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금전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이 조정 친화적인지, 과연 조정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유의할 점

특히, 형사조정인 경우 조정위원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 무죄'의 실제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갖기도 전에 '조정'이라는 이름의 '합의'를 강요받게 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아직 재판에서 그 실질적 유죄가 인정되기도 전에 '조정'에 회부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게 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II. 조정의 실제

1. 개관

민사소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으로 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조정 친화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 문제는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감정’인데,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조정 성공률의 90%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이 처한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조정위원들이 특히, 소송 내지는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정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실제 조정을 원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결’을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으로 법리와는 동떨어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의적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정위원들이 법리에 밝지 못한 경우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조정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조정을 할 경우 쌍방 당사자에게 상호 양보를 강요하지만, 동량 동질의 양보를 하는 조정은 거의 없고, ①법률적으로 누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지, ②당사자 중 누가 더 마음이 약한지, ③누가 더 빠른 해결을 원하는지, ④상대방의 채무상환능력은 어떤지에 따라 조정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요소는,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이 법에 의한 해결 내지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2. 조정의 특성

조정은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스스로가 공동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민, 형사 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정에 회부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정 목표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 도출’이고, 이 경우 조정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권한만을 가질 뿐, 해결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법과 실제의 괴리 - 일반적으로 갈등을 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우, 의뢰인이 실제 느꼈던 사안에 대한 이해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복잡한 갈등 실체가 법적 사실관계로 전환되면, 법적 측면에서 사실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심리적 사회적 입장 등은 덜 고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 예 : 이혼소송 사례 〉

A라고 하는 여성이 B라고 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을 청구. A 주장은,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것. 자신은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이 대학원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딸을 낳은 후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 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시부모의 병수발을 하였다는 것. 그러는 동안, 남편은 성공하여 출세가도를 달리며 주말이면 골프, 거래처 사람들과의 접대 등을 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당연시하였음.

-> 이 상황에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실질적 갈등의 근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만 한정시키게 되는 경우 조정이 어려움. 실제로 많은 조정위원들이 결국 ‘이혼유무와 돈’문제로 이 사건을 보려하고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존중’이 더 큰 문제였음.

-> 상호 어떤 해결방안이 타당한지?

3. 조정을 위한 인간 심리의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상대적 정의'를 이해해야 조정이 가능해진다.

Garrett Hardin(1968)의 '공유지의 비극' 1)

- (1)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하딘(G. J. Hardin)의 논문.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즉 그 목초지는 공유지이다. 소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공유지에 내재된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 각자는 "나의 소를 한 마리씩 더 늘려 가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 (2) 소를 한 마리 늘리게 되면 일장일단의 효용이 있다. ①긍정적 요소는 한 마리의 소의 증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소를 팔면 거의 +1이라는 효용이 있을 테니까. ②부정적 요소는 소가 한 마리 더 늘어나면 그만큼 풀을 많이 뜯어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과도한 방목의 효과는 모든 소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가지게 된다. 즉 소치는 사람이 n 명이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1/n$ 밖에 안 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치는 사람은 소를 한 마리 더 키우는 게 낫다.
- (3) 따라서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그러나 마침내 계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실을 보고 기겁을 할 것이다. 그 많은 나머지 소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아마도 과도한 방목으로 풀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결과일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 (4) 결국 개인들의 이익 추구에 의해 전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한다는 개념으로, 이 이론은 공유지는 그저 공짜라고 믿는 개인들의 사적 욕망에서 출발해 결국 무분별한 남획과 남벌로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
- (5) 지하자원, 공기, 물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

에른스트 페르(Ernst Fehr)의(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 2)

- (1)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Ernst Fehr)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
- (2)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달러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걷히면 이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투자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만약 모든 사람이 10달러씩을 투자했다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20달러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 (3)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이 중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면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 챘다.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남 배 불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 (4) 페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냈다.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객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 단 신고를 할 때는 사법 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여액으로 모여져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배분되었다. 이렇듯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압제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만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다.
- (5) 페르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하며, 이런 길을 마련해주면 시스템은 예상 외로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한 일이지만, 공유지가 황폐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양들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감시의 눈길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 (6) 공유지를 축내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하며, 이에 더해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에 바로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은 비로소 달래질 수 있는 것이다.

1)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법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안 된다. 갈등의 표면구조와 심층심리 구조의 구분이 필요하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갈등의 심층심리 구조와 표면구조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 불가능한 갈등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4. 갈등의 기본 특성 이해

결국 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쟁은 갈등적이다.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 내가 바라는 것과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 ① 갈등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긴장을 야기하고,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갈등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와 당위 상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당위 상태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상태와 당위 상태가 다른 이유와 원인은, 당사자가 당위상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또는 자원(물질적 사회적 자원, 시간)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내적 갈등이 당위 상태의 실현을 가로막기도 하며,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당위 상태를 성취할 수 없기도 한다.
- ③ 불명확한 당위상태나 불명확한 목표로 인한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5. 갈등 고조의 단계

갈등이 고조 되면 결국 내재적 긴장 상태가 극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겉으로 표출되게 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조정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

1단계 - 긴장 단계의 시작. 자신이 이 상태에 있음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2) 네이버 지식백과,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 2011. 10. 20., 케이엔제이

도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단계.

2단계 - 극단적 사고와 행동 및 말다툼 등으로 체면이 손상되고, 겉으로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면서 해결을 위한 욕구가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

3단계 - 실력행사(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소송 시작)

4단계 - 조정 : 실질적 갈등의 원인을 파악한 조정이 필요, 체면에 손상을 받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짐, 무의식적으로는 조정 불성립시 입게 되는 타격을 고려하는 상태

6. 갈등 해결을 설명하는 이론들³⁾

Dawes et al.(1977) 협력적인 사람은 상대방도 협력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비협력적인 사람은 상대방 역시 비협력적이라고 가정.

Spada & Opwis(1985) 참가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협력적 선택을 더 자주한다고 주장.

Yamagishi(1986) 상대방이 협력적이라고 신뢰하면 자신도 협력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

Bendor, Kramers, & Stout(1991) 애초부터 무조건적으로 협력하지만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위를 하면 보복행동을 하는 경우 상대방도 협력적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

Bierhoff(2000) 상대방이 중요한 법, 계약, 도덕적 규범, 공정성 규범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확신할 때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갈등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인지하면 격렬해진다고 주장.

Pastore(1952) 좌절감은 상대방의 방해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간주할 때만 공격성을 야기.

결국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 당사자는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여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자신의 동기와 주요 관심사를 놓고 대화할 수 있다면 이기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승승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고

3) '갈등조정 심리학', 문용갑, 갈등조정 심리학, 학지사, 2011. .02. 14.

협력을 통해 쌍방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비협력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협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을,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기적 행위로 맞서는 것. 만약 상대방의 협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상대방은 비협력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로 맞서게 되고, 결국 이기적 행위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상대방의 강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권리에 제한을 받을 때, 정당한 권리요구가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을 때, 상대방의 법과 계약위반, 불공정성, 책임회피, 착취 등에 대해 비난할 때 갈등은 격렬해진다. 특히 당사자가 인지한 불공정성이 크면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 갈등이 유발되고,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고 해가 되는 행위를 야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당사자는 자신에 대해서만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공감하거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대우 받을 경우에도 저항하거나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의 공정성 신념이 명료해져야 한다.

III. 성공사례 / 실패 사례

1. 성공사례⁴⁾

동부지방법원 사건 2015마 ****

원고 : 갑(오빠)
 피고 : 을(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의 남편)
 A : 갑의 어머니이자, 을의 장모
 청구 취지 : 을은 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4) 동부지방법원에서 본 조정위원이 2015년에 실제 성공시켰던 조정 사례

〈사건 개요〉

A는 젊어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하여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A의 두 번째 남편은 사망하였고, A는 현재 약한 치매에 걸린 상태.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일부 주었고, 부동산도 증여. 단, 아들이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를 여동생의 남편 앞으로 이전해놓고 아들이 요구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각서를 작성해놓은 상태. 약한 치매를 앓고 있는 A는 딸, 사위 내외와 함께 살았음.

아들이 몇 년 후 여동생의 남편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 거부하는 사유는, 아들이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특히 현재 70이 넘는 고령에 치매까지 걸리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를 딸 내외가 돌보았는데,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A는 내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아들이 꽤 씩하니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해주면 안 된다.

〈쟁점〉

A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아들이 아닌 사위 앞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민법상 증여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를 A가 철회 가능한가?

A는 치매에 걸린 상태인데 A의 의사는 어느 정도나 유효한 것인가?

A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당부 증여였는가?

A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부동산 소유권을 추후 이전해주겠다고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은 유효한 것인가?

〈조정 경과〉

A는 조정 내내 아들이 나쁘고 자신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사위와 여동생 역시 오빠가 나쁘고, 특히 자신들이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A의 병원비나 A를 부양하는 비용 등을 보전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조정 성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35% 지분을 이전하라.

2. 실패 사례5)

동부지방법원 사건 2015마 ****

원고 : 갑(유기견 훈련센터 소장)

피고 : 을(유기견 수분양자)

청구 취지 : 을은 갑에게 반려견을 인도하라.

〈사건 개요〉

갑은 개 훈련소를 운영하면서, 유기견을 데려다 보살피고 적당히 건강을 되찾아 준 다음 개를 분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A 개를 을에게 분양하여 줌. 갑의 주장에 의하면, A를 분양 받을 당시 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A 개의 안부 등을 갑에게 알려주고 잘 돌보아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분양을 받은 이후 을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함. 을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A 개를 분양받을 당시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A 개를 잘 돌보고 있으며 이미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 왔는데 갑이 부당하게 간섭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갑과 을은 상호간에 이용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들을 올리거나 상호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반려견인 A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결국 갑이 을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려견 인도청구 소송을 하게 됨. 을 역시 갑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갑에게 A 개를 보여주거나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쟁점〉

을이 갑으로부터 A 개를 분양 받을 때 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를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갑이 을에게 A 개를 양도함으로써 A 개에 대한 소유권 등은 영구적으로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조정 의 경과〉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 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조정이 진행되었고, 상호간에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여 을이 손해배상조로 100만원 가량을 갑에게 주고 A 개를 갑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조정안이 마련됨. 임의조정의 형식으로 조정조서가

5) 2015년 말에 동부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으로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추후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준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작성되었음. 반려전을 둘러싼 미담 사례로 알려졌는데, 조정문을 받아 본 피고측에서 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준재심 절차를 진행

위 조정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차이점은, 반려전 인도 청구 소송에서는 조정에까지 이른 피고측에서 조정 당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불리하게 조정을 강요당했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해보면,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를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 피고 입장에서 자신이 손해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패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 조정장을 벗어나서 생각해보니 본인들이 조정을 강요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아서 억울하다고 느꼈다는 점 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반려전의 인도와 관련하여 각각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치열하게 다툰 정도로 원고와 피고 모두 예민하고 자존심이 센 성격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내가 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나, ‘내가 손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순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조정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얼마나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V. 결 어

결론적으로, 조정사건의 본질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갈등 원인을 찾기 보다는 사건을 ‘도식화’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 당사자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실적 위주’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나 명분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양보할 실질적 마음자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위원들이

116 분쟁해결

이러한 점을 잘 잡아내서 조정의 실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사건 배당 받기 ->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문제 규명과 분석) -> 갈등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결책 찾기 -> 감정적 마무리 -> 실질적 조정’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정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감정을 다독겨려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사실과 ‘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